

## 기금 운용 규정

제정 2018. 1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적립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규칙, 기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용원칙) ① 자금의 운용은 유동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단기자금의 운용은 수시 지출에 대비하여 적정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은 주어진 허용위험범위 안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되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수립) 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 학년 초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장·단기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안정성에 기반을 둔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3.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4.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5. 중장기 자산 배분안
6.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① 장·단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운용성과를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여건과 전년도 운용실적 등에 기초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③ 기준수익률은 운용상품의 만기나 투자위험을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하며, 운용자산 또는 상품의 운용성과를 사후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

제6조(자산의 배분) 투자지침서에서 정한 자산배분 범위 내에서 자산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근거하여 투자 상품별 최적 자산배분과 투자비율을 정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정) ① 자금예치 및 투자기관의 금융기관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1.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2. 대학의 경영과 재무 운영에 따른 주된 거래 금융기관, 지역적 특수성, 거래 상품의 특수성, 정보제공 및 거래의 편의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② 자금예치 투자기관의 교체 여부는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8조(외부위탁운용) 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외부 자산

운용 기관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률, 운용한도, 운용대상 유가증권 등 위탁자산 운용기준을 정하여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험관리 원칙) ① 운용담당자는 자금 운용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운용자산의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고 이를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성과평가) ① 운용담당자는 자금운용계획 등에 명시된 자산군 또는 상품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각 자산종류 및 상품별로 적절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운용성과를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등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목표수익률, 운용한도, 운용대상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심의.
3. 유가증권 투자 대상별 투자비율 및 한도, 기준수익율 및 성과평가 심의.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 총장이 하며 위원은 투자 및 재무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교직원 3인과 외부 전문가 1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4조의5 ④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재정팀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에 외부 기금운용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기금운용 및 투자 정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